

국가회계기준센터 News Letter

<http://www.nasc.or.kr>

◆ 신년사

·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 자산 부채 소위원회 개최 등

◆ 국가회계제도 동향

◆ 외국회계기준 동향

· 국제 공공부문 회계동향

· 미국 공공부문 회계동향 등

◆ 주요 질의회신 요약

◆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유형·실사현황·인식 필요성

◆ 국가회계기준센터 공지사항

· 센터 연구원 모집

· 국가회계저널 발간을 위한 논문 공모

신년사

■ 내년 4월 첫 국가통합재무제표 나온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저물고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발생주의 국가회계 발전에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신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감사원 결산담당관실,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그리고 각 부처 결산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재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도부터 종전의 현금회계에서 기업이 쓰는 발생주의회계로 전환해 국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에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립하고 회계직 공무원을 별도 직렬로 선발하도록 추진 하는 등 새로 바뀐 회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제도는 지난해까지 시범 적용한 후 올해 결산보고서부터는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 한해는 참으로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현금회계는 현금이 오가는 경우에만 비용과 수익을 계상하지만, 발생주의회계는 현금거래가 없어도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회계제도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정부로서는 중요한 개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활동의 성적표가 그 기업의 결산서인 것처럼 국가의 경우도 결산서를 통해 국가 재정활동의 건전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러한 회계제도의 개혁을 국가재정체계를 바꾸는 일대 혁신이라고 일컫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새 국가회계제도는 한마디로 국가의 자산과 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총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종전에는 국가자산으로 잡히지 않고 관리가 소홀했던 방대한 규모의 사회기반시설도 빠짐없이 자산으로 계상돼야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유용하는 등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자산의 관리비용 파악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다시 불거지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논란도 새 회계제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정 투명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 86조3000억원이 집행될 복지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전 방식은 단순히 주요 사업의 직접적인 집행내역만 제시할 뿐 보건복지부 본부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회계제도는 200여 개 세부사업별로 직간접적인 모든 비용을 집계해 서로간의 대비가 가능하고 별도로 작성하기로 한 성과보고서와의 비교를 통해 지출된 비용들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회계제도 개혁의 성패는 국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새 회계제도가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회계제도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기성세대에게 다루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 입니다. 특히 요즘은 각국의 재정 건전성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과 같이 국가재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새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올 한해도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변함없이 발생주의 국가회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편 호 범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임정혁 연구원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02) 3149-7553 rau438@kicpa.or.kr

■ 자산 및 부채 회계처리 소위원회 개최(11. 25, 11.30)

제12차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된 자산 및 부채 회계처리 소위원회가 11월 25일 및 11월 30일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개최되었다. 자산 회계처리 소위원회에서는 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지침 제정방안과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안)을 논의하였고, 부채 회계처리 소위원회에서는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 및 평가방법과 연금충당부채 최초 인식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국가회계 전문 및 기본 교육과정 강의 지원 (9. 27 ~ 12. 8)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국가회계 전문 및 기본 교육과정에 교재 작성 및 강의진에 참여하였다. 강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및 특성화 교육과 전국 재무관, 지출관 등 dBrain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통합 교육과정은 국가회계기준, 항목별 회계준칙, 회계처리지침 등을 중심으로 실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분석을 위한 심화교육이었으며, 특성화 전문교육은 기금회계담당자 등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숙련자 대상 심화 및 특성화 교육이었다.

■ 연금충당부채 및 사회기반시설 T/F 회의 개최(2010. 11~2011.1.)

연금회계준칙 및 회계처리지침 마련을 위해 국가회계기준센터,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 부처, 4대 공적연금 등 학계 및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충당부채 T/F 3,4차 회의가 11월 4일과 11월 18일에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 평가방식, 보험수리적 가정을 논의하고,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공시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1월 10일에는 연금회계준칙(안)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 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2011회계연도 국가통합재무제표 계상을 목표로 국가회계기준센터와 사회기반시설 관련 부처 및 위탁기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인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기반시설 T/F는 11월 19일에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위탁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고속국도, 철도, 댐, 상수도)을 대상으로 dBrain 국유재산 대장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2차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 개최(12.7)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가 12월 7일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연금충당부채 회계처리 추진현황,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추진현황, 자산평가방안 추진현황, 사회기반시설 실사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센터 업무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 축조심의 회의 개최(12.21)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연금회계준칙(안)과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지침(안)에 대한 조문별 축조 심의를 위해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및 학계 전문가 등 13인을 모시고 축조심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수정안에 반영되어 자산부채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 2011년도 국가회계기준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 (12.29)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와 2011년도 국가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등을 위한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및 운영 계약을 지난 12월 29일 체결하였다. 2011회계연도 국가통합재무제표를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는 만큼 올해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제도의 완성을 슬로건으로 사업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발생주의 재정통계로의 개편에 따른 개편 방안 연구 및 지원과 공공기관 IFRS 도입 지원과 같은 사업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전문인력 교육 ('11.1.17~21)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50개 중앙관서가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를 차질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현장 배치하는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 사업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전문인력의 교육이 한국공인회계사회 5F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하여 5일간 12회, 21시간의 강의를 실시하였다.

국가회계제도 동향

한소영 연구원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02) 3149-7554 hsy2010@kicpa.or.kr

■ 2012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은 201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시험위원회의 의결('10.12.3 및 12.6)을 거쳐 2012년도부터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정부회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회계)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다만 2012년부터 출제하되, 수험생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과목의 10%내외로 출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반영이 확정됨으로써 공인회계사 등 민간회계전문가의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 제고와 함께 국가회계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는 한편, 대학 등의 정부회계 교육 강좌 개설 및 전문연구체계 형성 등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인력의 저변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0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교육 실시

기획재정부는 2010회계연도 정부결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난 12월16일부터 금년 3월까지 중앙관서 결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 정부결산 작성지침」에 따라 결산작성요령 및 수행절차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세부내용은 세입·세출·기금·국가채권·국가채무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종류와 이의 작성기준, dBrain을 이용한 결산서류의 작성·제출 방법 등이다.

교육은 교육 대상자별(회계계정별 총괄마감담당자, 기업회계·책임운영기관결산담당자, 기금결산 담당자, 결산서연계기관 담당자, 중앙관서예산결산총괄담당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재무결산담당자, 중앙관서 재무결산담당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획재정부 정보화교육장에서 이루어진다.

외국회계제도 동향

안지영 연구원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02) 3149-7559 albert26@kicpa.or.kr

국제 공공부회계기준위원회 동향

IPSASB, “공공부문의 일반목적 재무보고 개념체계” 공개초안 발표(Dec. 15, 10)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국제공공회계기준에 적용되는 명확한 개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일반목적 재무보고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Entities)”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동 공개초안은 (1) 역할, 권한 및 적용범위, (2) 목적 및 이용자 (3) 질적 특성, (4) 보고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IPSASB는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11년 6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 (1) 개념체계의 역할, 권한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 (2) 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와 그들의 정보 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 (3)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과 제약요인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특히 (a) 하나 또는 기타의 경제적 현상의 묘사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중요한 오류가 없을 때 만족시키는 질적 특성을 “신뢰성” 보다 “충실한 표현” 으로 서술하는 것과 (b) 중요성이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목적적합성의 제약요인으로 분류되어야만 하는지
- (4) 보고실체를 파악하는 기준과 그룹보고실체에 포함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하는지

IPSASB는 동 공개초안 외에도 재무제표의 요소 및 인식(Elements and Recognition), 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 측정(Measur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in Financial Statements)에 대한 의견수렴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하였다.

[상기 공개초안 및 의견수렴서는 IFAC website에서 확인 가능
(<http://www.ifac.org/Guidance/EXD-Outstanding.php>)]

FASAB, 일반유형자산 관련 회계실무지침서(TR) 공개초안 발표 (Dec. 10, 2010)

미국 FASAB 내의 정책소위원회인 회계감사정책위원회(Accounting and Auditing Policy Committee: AAPC)는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연방재무회계실무지침서(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Technical Release: TR) 공개초안 - “일반유형자산 처분” 및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 추정”을 발표했다.

일반유형자산 처분 회계처리지침(Implementation Guidance on the Accounting for the Disposal of G-PP&E)은 기존 연방재무회계기준 6호 “유형자산”의 실무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일반유형자산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제거 구분
- ✓ 일반유형자산 처분에 관련한 복잡한 상황
- ✓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중단 또는 제거를 야기하는 사건

동 회계처리지침은 향후 일반유형자산의 처분, 폐기 또는 제거 및 관련 정화비용의 일관된 회계처리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원가 추정 회계처리지침(Implementation Guide for Estimating the Historical Cost of G-PP&E)은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원가 추정방법론 및 평가의 문서화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추정방법론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또는 구체적인 질문 접수는 2011년 2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동 공개초안은 FASAB website에서 확인 가능 (<http://www.fasab.gov/exposure.html>)]

FASAB, 연방재무보고 모형의 개선안 발표 (Dec. 22, 2010)

미국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은 기본적인 연방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제표, 용어 및 방법론(이하 “재무보고모형”이라 함)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8년 중반 이후 FASAB은 연방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보이용자의 재무정보 요구사항(needs)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다. 2010년 4월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FASAB는 동 연구결과의 검토, 연방재무보고모형의 연구 및 개선사항 제안을 위해 관련 전문가 9인으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FASAB의 목적 및 일반국민의 요구사항인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해 연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 등의 정보를 전자, 웹기반 형식(electronic, Web-based method)로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전자 웹기반 형식의 재무보고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동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multimedia presentation) 형식으로 재무 및 성과정보 제공
- ✓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세부 자료 드릴-다운(drill-down) 기능* 활용 가능
 - ※ 드릴-다운기능 : 가장 요약된 레벨로부터 가장 상세한 레벨까지 차원의 계층에 따라 분석에 필요한 요약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기능, 동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심도 있는 분석 가능
- ✓ 정보이용자의 분석을 위한 자료의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 ✓ 정보이용자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용 및 성과 보고

또한 T/F는 정보이용자의 재무정보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재무, 비재무적 지표 및 기존 재무보고에서 재무정보 표시의 변화를 보고하도록 제안했다.

위의 전자, 웹기반 형식의 재무보고 및 기타 개선방안의 성공 여부는 일반국민의 관심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으므로, T/F는 연방재무정보 웹사이트 설계 및 동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동 개선안은 FASAB website (<http://www.fasab.gov/reports.html>)의 보고서 섹션에서 다운로드 가능]

GASB, 기준서 제60호 “민간투자사업” 발표 (Dec. 16, 2010)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는 기준서 제 60호 “민간투자사업”을 발표했다. 기준서 제60호는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증가하고 있는 민관협동(public-private partnership) 또는 관-관협동(public-public partnership)의 형태인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부(사업허가자, transferor)가 민간 회사 또는 다른 정부(운영자, operator)에게 도로, 병원,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capital assets)의 투자비를 부담하게 하고 일정기간 동 시설의 사용료 징수권(사용수익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운영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사업허가자를 대신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동 기준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계상 주체(사업허가자 또는 운영자), 운영자로부터 수령한 투자비의 수익 인식시기, 사업허가자의 의무 계상 및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자인 정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동 기준서는 사업허가자 및 운영자 모두의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존 기준서 체계에서 여러 기준서에 혼재된 복잡한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를 단일화된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혼동을 최소화한다.

동 기준서는 2011년 12월 15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표시하는 재무제표에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GASB, 기준서 제61호 “재무보고실체” 발표 (Dec. 17, 2010)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 (GASB)는 기준서 제 61호 “재무보고실체”를 제정·발표했다. 기준서 제61호는 기준서 제14호 “재무보고실체 (‘91년 제정)” 및 기준서 제34호 “기본 재무제표 및 결산개요(MD&A) (‘99년 제정)”의 제정 이후 제기되어진 재무보고실체에 대한 이슈사항을 해결하고,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잘 충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기준서는 재무보고실체--주정부(primary government)와 그 산하기관(부문, component units)으로 구성됨--의 재무정보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동 기준서는 주정부의 관료가 재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문만을 보고실체에 포함함으로써 재무정보 이용자가 주정부 관료의 공공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실체에 포함되는 부문에 대한 요건(criteria)을 개정하였다. 또한 동 기준서는 특정 상황아래에서 산하기관이 주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본질적으로 주정부와 동일할 때 그 산하기관을 주정부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요건(blending criteria)를 개정하였다.

주립대학과 같이 기능별 구분 없이 사업형 활동별로 재무보고하는 주 정부의 경우, 재무정보 이용자가 주정부와 그 부문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요약된 결합정보(condensed combining information)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 기준서는 주정부의 부문 실체에 대한 지분(equity interest)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주 정부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를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하며, 주 정부 지분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캐나다 공공부문 회계 동향

PSAB, PS1200,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하기 위한 공개초안 발표(Nov. 23, 2010)

캐나다 공공부문의 회계위원회(PSAB)는 2009년 “금융상품”, “외화환산”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PS1200,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하기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측정손익계산서(A statement of remeasurement gains and losses)의 도입

(2) 재측정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 미결제된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 부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익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미실현 손익
- 제거나 결제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에 재분류된 금액
- 정부의 재무제표요약에 공기업과 파트너십의 운영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보고된 기타 포괄손익

Consolidated Statement of Remeasurement Gains and Losses		
For the year ending March 31 (\$ millions)	20X2	20X1
Accumulated remeasurement gains and (losses) at beginning of year	(47)	0
Unrealized gains (losses) attributable to:		
Foreign exchange	(35)	
Derivatives	130	(105)
Portfolio investments	54	108
Amounts reclassified to the statement of operations:		
Portfolio investments	20	(50)
Net remeasurement gains and (losses) for the year	169	(47)
Accumulated remeasurement gains and (losses) at end of year	122	(47)

(3) 별도의 재무제표로 재측정손익을 보고함에 따라 향상된 공공부문 재무제표의 유용성, 파생상품, 기타 공정가치 평가 항목과 관련된 변동성 및 외화 표시 금액의 명확화

호주 공공부문 회계 동향

AASB, AASB 9 금융상품 개정안 발표(Dec 14, 2010)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AS39 “금융상품” 개선 1단계 완료에 따라 AASB 9 “금융상품”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금융자산 측면에서 회계실체의 사업모델과 금융상품의 계약현금흐름을 기초로 상각후원가 및 공정가치 분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내재파생상품 요건 및 만기보유금융자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간소화 하였다.

AASB 139 금융상품의 금융 부채의 측정과 분류에 대한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수정없이 AASB 9 금융상품으로 옮겨졌다. 다만, 회계실체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부채공정가치 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FEE-CNDCEC 공동,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의 과제” 세미나 개최 (Jan. 11, 2011)

유럽회계사연맹 (Federation of European Accountants: FEE)와 이탈리아 CNDCEC는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의 과제 (Challenges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Public Sector)” 라는 주제로 2011년 1월 1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금융위기 속에서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국가간 경험 공유, 발생주의 회계 도입시 과제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동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동 세미나에서는 이탈리아 및 영국, 프랑스 등 유럽 13개 국가의 참여 속에서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의 향후 전략 및 세미나 참가국가의 공공부문 회계 및 감사에 대한 경험 - 발생주의회계 도입의 혜택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럽 국가의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동 세미나 자료는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fee.be/news/default.asp?library_ref=2&content_ref=1336)]

주요 질의회신 요약

박정규 국가회계기준팀장, (02) 3149-7565 jkpark@kicpa.or.kr

■ [질의회신2010-1] 수익증권 이익분배금 회계처리

- Q. 장기투자목적의 해외채권연동펀드에서 목표수익률 달성에 따라 지급된 이익분배금을 국내 MMF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익분배금을 투자증권처분이익(손익항목) 또는 투자증권평가손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A. 재무제표상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의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평가 및 이익분배"에 따라 해당 금액을 단기 또는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회신2010-2] 청산기간동안의 청산재무결산 수행 여부

- Q. 부처 폐지 이후 청산기간동안의 청산재무결산 수행 여부
- A. 폐지일 기준으로 모든 자산이관 및 수입처리 등을 정리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별도 결산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질의회신2010-3] 출연금 수익의 회계처리

- Q. 출연금 수령 시 사업비용 충당 용도로 조성된 재원으로 보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바, 명확한 회계처리 질의
- A. 출연금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그 용도에 따라 비교환수익 또는 순자산증감으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하고, 사용 목적을 구분할 수 없다면 주된 용도에 따라 비교환수익 또는 순자산증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의 출연금 용도가 차입금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동 이자비용이 사업비용에 해당된다면 비교환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회신2010-4] 경륜,경정,투표권사업 기금출연금 회계처리

Q. 경륜,경정,투표권사업 기금출연금 회계처리 방법 및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A. 출연금은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증감 항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에 오류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중대한 오류 판단 근거 등을 주석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오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 [질의회신2011-1] 토지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의 범위

Q. 1. 토지와 건축물 취득시 개별자산 인식 가능여부

2.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의 범위

A. 1.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인식여부, 인식시기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련법령에서 분리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2.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은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이므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하는 제반비용들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기타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질의회신2011-2] 융자회계준칙 적용범위

Q. 융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금리 수준으로 융자사업을 수행시 융자회계준칙 적용대상 여부

A. 「융자회계준칙」의 적용범위는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융자회계준칙의 적용 여부는 융자사업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국채 이자율 또는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회신2011-3]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

Q.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정기에금의 계정분류 및 동 상품의 평가손익을 수익 또는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A.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정기에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11에 규정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주계약인 정기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평가손익은 재정운영표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 : 단독으로 거래되지 않고 주계약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의미. 예를 들면 이차지급이나 상환조건이 환율에 따라 변동하는 채권을 구입할 경우, 채권에 통화관련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

■ [질의회신2011-4] 출연금 수익의 회계처리

Q. 출연금 수령 시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증감과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등 중 어떤 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A. 출연금이 「기금 회계처리지침」 I. 2. (1) 에 따라 운영비 등에 충당할 용도로 유입되는 것으로서, 재원의 원본이 소진되는 것이라면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에 비교환수익 항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순자산증감 항목으로 처리된 출연금은 이 오류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중대한 오류 판단 근거 등을 주석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오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 [질의회신2011-5] 이자수익의 재정운영표 표시방법

Q. 국채발행 등 자금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재정운영표 상 프로그램수익 또는 비배분수익으로 계상할지 여부

A. 「원가계산준칙」 제18조 따르면 이자수익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은 재정운영표상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되,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이자수익은 「원가계산준칙」 등 회계관련법령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유동훈 연구원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02) 3149-7556 blacksky21@kicpa.or.kr

■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유형·실사현황·인식 필요성

1. 서론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국유 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으로 관리되었던 자산들이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소유의 자산현황 파악이 보다 용이해지고 감가상각·수선유지 등 자산과 관련된 비용 발생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이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국유재산법 상 결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용 재산 즉 사회기반시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과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현재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공공용 재산 중 도로·철도·다목적댐·공항·항만·어항·상수도·국가하천 등 8종 자산을 사회기반시설로 정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때부터 일반유형자산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말까지 사회기반시설 8종 자산에 대한 최초 실사작업을, 2011년에는 가격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최초로 국가통합재무제표에 계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기반시설 실사지침서 및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작성한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유형 및 재무제표 인식의 필요성과 실사현황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및 유형

① 일반적 정의

옥스퍼드 캐나다 영어사전은 'Infrastructure' 즉, 사회기반시설을 사회나 기업에 기초가 되는 구조물로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간주되는 도로, 교량, 하수도 등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와 사회의 경제활동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말하

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활동과 밀접한 사회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최근에는 학교,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생활환경시설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운수, 전력과 같은 동력 및 공중위생시설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정부나 지방공공단체의 통제아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라 불린다. 또한, 특정기업 또는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기업 활동 또는 공익과 관련되는 간접적 필요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에 ‘간접자본’이라고도 한다.

사회기반시설은 개인, 기업 및 정부를 비롯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친다. 마을, 시, 도, 국가 등 현대사회는 사회기반시설 없이 제 기능을 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 또한 잘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사회기반시설은 지방 및 도시 지역을 상업 중심지와 연결시키고, 하나의 도시를 다른 도시와 연결시키며, 국가 내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재화 및 서비스의 이동을 가능케 하며, 사회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발생하는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개선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회기반시설에는 다양한 공공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제도 및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및 국민들의 삶의 수준, 복지와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주춧돌이자 현대문명의 기틀이라 할 수 있다.

② 국가회계기준에서의 정의

현재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중 일부자산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제14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①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②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한 자산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는 자산으로서 국가(중앙정부 부처)가 관련 법상 1차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국가의 소유 및 실질적 통제를 필수조건으로 한다. 또한 국가의 “기반”이라 함은 물류·에너지·사람의 이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역시 사회기반시설은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 형태를 구성하며,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

사회기반시설은 그 특성상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일반유형자산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철도의 경우, 1960년대에 완공된 철도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일반유형자산인 차량운반구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함을 뜻한다. 미국지방정부회계기준(GASB)에서도 사회기반시설은 일반유형자산을 충분히 상회하는 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회계기준 재정상태표 상 사회기반시설 자산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국가가 1차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본질적으로 고정된 네트워크 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일반유형자산에 비해 긴 자산이 해당된다.

③ 국가회계기준 사회기반시설 유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는 49종의 자산을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사회기반시설 인식 요건을 만족하는 8종 자산(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이며, 이상의 8종 자산은 제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09.7.7)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8종으로 범위를 좁힌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이 해석하기에 따라 그 범위의 변동 폭이 커서 다양한 자산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관된 사회기반시설 인식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산으로 실사 및 평가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기반시설 세부내역 및 관련 법령>

사회기반시설종류	세부 내역	관련 법령
도로	고속국도	도로법
	일반국도	
철도	일반철도	철도사업법
	광역철도	
	고속철도	
항만	지정항만	항만법
댐	다목적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공항	공항시설	항공법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도법
하천	국가하천	하천법
어항	국가어항	어촌어항법

3. 사회기반시설 인식의 필요성 및 실사현황

여기서는 그동안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전까지 관심을 갖지 않던 사회기반시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이유와 관련된 해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실사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① 사회기반시설 재무제표 인식 이유

첫째,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인식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국유재산 규모에 대한 현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결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용 재산(도로, 하천, 항만 등)에 대한 실사 및 현황 파악을 통해 국가자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실사작업을 통해 그동안 취득일자가 오래되어 소유주체가 불분명했던 사회기반시설 자산들의 국가소유 여부를 분명히 한 것도 재무제표 인식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무정보는 정부가 현행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무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에 대한 불충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관련된 관리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관리가 소홀해지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도로는 파손되어 이용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며,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셋째,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정보는 자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취득원가·감가상각 및 내용연수에 대한 정보는 해당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교체 여부 및 시점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자산의 증가·감소뿐 아니라 손상에 대한 내용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자산관리의 측면에서 보다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② 사회기반시설 인식요건 해외사례

국가별로 사회기반시설을 일반유형자산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일반유형자산 중 어떤 자산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느냐의 여부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국가에 따라서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발생주의 도입 국가별 사회기반시설 인식 현황>

국가명		정 의
미국	연방정부 (FASAB 6)	▪ 별도 구분하지 않고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인식
	지방정부 (GASB 34)	▪ 상당히 긴 내용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
국제공공회계기준 (IPSAS 17)		▪ 유형자산 중 일부자산은 'Infrastructure asset'으로 표시 ▪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일부분 ▪ 특화되고 대체적 용도가 없음 ▪ 이동 불가능 또는 처분의 제한
뉴질랜드 (NZ IAS 16)		▪ 1년 이상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자산 또는 서비스의 생산·공급 또는 임대를 위한 자산 ▪ 사회적 효익 제공을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 별도 구분하지 않고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인식
호주 (AASB 116)		▪ 별도 구분하지 않고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인식
대한민국 (국가회계기준 제14조)		▪ 유형자산 중 일부자산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

③ 사회기반시설 실사현황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계상을 위해 2009년 10월경부터 실사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실사작업은 8종의 사회기반시설을 각각 토지, 건물, 공작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실사담당자와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이 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통해 그동안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자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실사 완료된 자산을 자산대장에 등재하는 작업을 2010년말까지 계속 수행해 왔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GIS 시스템을 통해 완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실사 결과 점검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재무제표 인식, 유형 및 실사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회기반시설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다. 담당 자산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최근의 몇몇 문의도 이러한 관심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물론 아직 제도의 도입 단계이다 보니 관련 문의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질의는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http://www.nasc.or.kr>)를 이용하면 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최초로 실시하는 사회기반시설 재무제표 계상 업무를 통해, 국가자산 규모에 대한 명확한 파악 및 향후 자산관리를 통한 국가재정 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회계기준센터 공지사항

김상노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02) 3149-7551 alc@kicpa.or.kr

■ 센터 연구원 모집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및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적인 연구·조사 및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연구원 7명 (국가회계기준팀 4, 평가분석팀 3)

2. 자격기준

-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전공)과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재정 또는 회계 및 평가분석 등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참조

■ 국가회계저널 발간을 위한 논문 공모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다음과 같이 국가회계저널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합니다.

1. 공모 주제

-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 국가재무제표 활용 방안(프로그램 원가 산출을 통하여 예산에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사례 제시 필요)

2. 응모자격

- 제한 없음

3. 응모기간 : 2011. 5. 16 ~ 5. 27 (금) 18:00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참조

■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재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새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뉴스레터 Vol.2 신년사 중에서]